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사규번호		page
		제정일자	2013.08.13	1/8
		개정일자	2023.06.26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행복이가득한집 (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시설 내 설치되는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및 영상정보 보호에 대해 요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라 한다)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처리되는 영상 정보 중에서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내부, 주차장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민원인 또는 주민의 출입에 제한이 없는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정보주체)가 접근 및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6. 「비공개된 장소」란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 가능한 통제 구역 등 공개된 장소 이외의 모든 장소를 말한다.
7. 「관리책임자」라 함은 운영담당자를 지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행복이가득한집의 시설장을 말한다.
8. 「운영담당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상적인 관리·유지, 열람 요청의 접수·처리 등 관리 책임자로부터 위임 받은 행복이가득한집 사무국장을 말한다.
9. 「모니터링 담당자」라 함은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의 복지과장, 사회복지사, 각 생활관 요양팀장을 말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사규번호		page
		제정일자	2013.08.13	2/8
		개정일자	2023.06.26	

제 3 조 (적용범위)

화재, 도난예방,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 하는 영상정보처리기와 이로서 수집 처리되는 화상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제 4 조 (관리책임 지정 등)

영상정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단위별 관리책임 및 수행할 업무를 지정한다.

1. “관리책임자”은 행복이가득한집 요양원 시설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요양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 총괄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2. “운영담당자”는 사무국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해당 부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 총괄
 - 2)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리운영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4)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5)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6)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7)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모니터링 담당자”는 사무국 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생활관 요양팀장(부재 시 부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운영
 - 2) 수급자 안전을 위한 수급자 상황 및 상태 변화 관찰
 - 3)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가 교체 또는 신규로 지정되는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지침	사규번호		page
		제정일자	2013.08.13	3/8
		개정일자	2023.06.26	

제 5 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및 목적)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2 및 제 33조의 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따른 시설급여 제공기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다.

제 6 조 (설치)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침실,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2. 침실은 각 침실별로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별지 서식 제13호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촬영할 수 있음
3. 요양원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간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가, 수급자 및 보호자, 종사자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현관문 외 부출입문, 마당 및 주차장)
 - 2) 요양원 내부의 계단과 계단 사이의 연결 공간
 - 3) 요양원 안전관리 및 보안에 중요한 공간 및 장소
4. 야간 녹화를 위해 조명을 설치하거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제 7 조 (설치구역)

1. 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총 61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 1) 물리치료실 1대, 엘리베이터 1대, 침실 41대(침실 각 1대)
 - 2) 공용공간 16대
(프로그램실 1대, 식당 1개, 주 출입구 1대, 부출입구 1대, 4개 층 각 거실 및 복도 각 3대)
 - 3) 외부공간 2대(주차장 2대)
2.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주출입구 및 게시판 설치한다.
3.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국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 1) CCTV 운영 모니터
 - 2) 디지털 녹화기
 - 3) 그 밖의 부대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지침	사규번호		page
		제정일자	2013.08.13	4/8
		개정일자	2023.06.26	

제 8 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 및 촬영시간)

요양원 내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성능 : HD급 이상, 130만 화소 이상
2.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 촬영
3.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영상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소망관 휴게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 9 조 (설치 시 사전승인사항)

설치 운영 시 책임관은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사용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사용담당부서.책임자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관리

제 10 조 (안내판의 설치)

1. 시설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2. 안내판은 다음 각 호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촬영 시간, 설치 장소(촬영 범위)
 - 2)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 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범위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와 시설 내 게시판에 설치 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사규번호		page
		제정일자	2013.08.13	5/8
		개정일자	2023.06.26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취급 및 관리

제 11 조 (화상정보 사용의 제한)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 할 수 없다.

제 12 조 (화상정보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3 조 (보호조치 등)

1.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며 수리 및 기타 사유로 타인이 접근 하여야 할 경우 승인을 받고 접근권한이 부여 된 자가 입회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3.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장치를 강구한다.
4.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자체실시 및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4조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1. 영상정보의 존재확인과 열람(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지침	사규번호		page
		제정일자	2013.08.13	6/8
		개정일자	2023.06.26	

- 1) 방법, 시설보호, 화재와 관련하여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2) 정보주체가 열람 요구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의해 필요한 경우
2. 제1항 제2호의 경우 열람 등의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 1)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관리책임자에게 열람 등을 요청하고, 별지 제6호(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용 모니터가 설치된 출입제한구역 내에서 열람 등을 실시한다.
 - 3) 영상정보를 열람 등을 한 자는 해당 영상정보에 대해 요청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1. 책임자는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서식 제 6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9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4.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6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6.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지침	사규번호		page
		제정일자	2013.08.13	7/8
		개정일자	2023.06.26	

제 16 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 제14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 해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 17 조 (화상정보 보호 조치)

-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 19 조 (장비관리)

-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1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지침	사규번호		page
		제정일자	2013.08.13	8/8
		개정일자	2023.06.26	

제4장 보칙

제 20 조 (사무의 위탁)

1.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21 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동의서

-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행복이가득한집 (14211000144)
- 동의 기간 : 202 . . . ~ 202 . . . 까지
- 보호자 연락처 :

춘천시장 귀하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기요양기관명	
	주 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p>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p> <p>※ 일부장소 미설치 시 미설치 장소 명확하게 표기</p> <p>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 20 . . . 까지</p>		
	동의자 현황	<p>■ 수급자 수 : 명</p> <p>■ 동의자 수 : 명</p> <p>- 수급자 수 : 명</p> <p>- 보호자 수 : 명</p>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 받았기에 붙임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이
아
그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출천시장 귀하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필증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기요양기관명	
	주 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 ※ 일부장소 미설치 시 미설치 장소 명확하게 표기 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 20 . . . 까지		
	동의자 현황	■ 수급자 수 : 명 ■ 동의자 수 : 명 - 수급자 수 : 명 - 보호자 수 : 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장 귀하

장기요양기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동의서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장소]

- ☒ 침실 ☒ 공동거실(복도포함) ☒ 프로그램실 ☒ 물리(작업)치료실
☒ 식당 ☒ 현관(출입문 좌·우) ☒ 엘리베이터 ☐ 기타()

-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 보호자 대상]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종사자 대상]

성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서명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보호자(종사자) 연락처:

행복이가득한집 시설장 귀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 열람 ☐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예: 연도,월,일,시간 정확히 기록)		
	청구영상 설치장소	(예: 장기요양기관 내 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합니다</p> <p>년 월 일</p> <p>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행복이가득한집 시설장 귀하</p>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제한 []제공 등 기타)			
<div>☐ 수신자 :</div> <div>☐ 주 소 :</div>			
요구내용			
열람일시	202 년 월 일(: ~ :)	열람장소	사무국
통지내용			
열람방법	직접방문을 통한 열람·시청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 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행복이가득한집 시설장 귀하

정정(삭제) 청구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파일명칭		열람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복이가득한집 시설장 귀하

번 호	정정(삭제) 조치 결과 통지서			
제 호				
수 신	_____ 귀하 (주소 : _____)			
개인정보파일명				
접수연월일				
정정(삭제) 결정 및 거부내용				
정정(삭제)거부사유 ※거부시만 사용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p>1.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p>2. 정정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p> <p>년 월 일</p> <p>행복이가득한집 시설장 귀하</p>				

[별지 제 9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열람·제공)

번호	구분	이용일자	요청자 (성명, 연락처)	파일명/형태/내용	이용목적/사유	이용 시간	이용 장소	담당자		비고
								성명	서명	
1	☐ 이용 ☐ 제공 ☐ 열람	. . .	() () ()	() () ()	() () ()					
2	☐ 이용 ☐ 제공 ☐ 열람	. . .	() () ()	() () ()	() () ()					
3	☐ 이용 ☐ 제공 ☐ 열람	. . .	() () ()	() () ()	() () ()					
4	☐ 이용 ☐ 제공 ☐ 열람	. . .	() () ()	() () ()	() () ()					
5	☐ 이용 ☐ 제공 ☐ 열람	. . .	() () ()	() () ()	() () ()					

작성요령

○ 구분: 이용/열람/제공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 열람 :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열람권한을 가진 자가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

※ 법 제33조의3에서 정한 영상정보의 이용·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본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 일시 : 이용·열람·제공 일시 기재(23. 6. 30. 15:00 등).

○ 요청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시) 00경찰서 00계 직급 계장 홍길동 02-123-4567

○ 이용목적/사유: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노인학대, 안전사고 확인, 범죄수사 등)

○ 이용·열람·제공하는 근거: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별지 제 10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

번호	파일명	파일생성일	파일 내용	삭제·파기 사유	파기일	파기담당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점검 관리대장 (주 점검)

◆ 주 1회 점검 : 2024년 ()월

[illegible]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내부계획 점검 관리대장 (월 점검)

◆ 월 1회 점검 : 2023년 ()월

점검 항목		점검결과		점검 일자	조치사항	확인 항목
		적합	부적합			
① 설치 및 관리						
1	저장장치는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고 있는가?	☐	☐			
2	13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로 화면 속 인물의 행동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는가?	☐	☐			
3	카메라는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있는가?	☐	☐			
4	카메라는 필수 설치구역에 1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	☐	☐			
5	카메라는 실내가구 또는 건축물 구조상 촬영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설치되었는가?	☐	☐			
6	CCTV 안내판은 주 출입구와 주변 경계부(담장)에 설치되어 있는가?	☐	☐			
7	CCTV 안내판의 기재 사항은 현재 해당기관의 CCTV 설치·운영상황과 동일한가?	☐	☐			
② 안전성 확보 조치						
1	모니터는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운영담당자 등 지정된 자에 한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가?	☐	☐			
2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			
3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잠금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	☐			
4	영상정보 관리 컴퓨터에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고 로그인 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였는가?	☐	☐			
5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로만 제한하고 그 외에는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	☐	☐			

점검 항목		점검결과		점검 일자	조치사항	확인 항목
		적합	부적합			
③ 운영 및 관리기준						
1	내부 관리계획에 책임자 지정,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등의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			
2	내부 관리계획의 기재 내용과 현재 설치·운영 사항은 동일한가?	☐	☐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부 관리계획(CCTV 설치현황 등)이 실제 설치·운영 현황과 동일하게 공시되고 있는가?	☐	☐			
4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정보는 최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삭제하고 있는가?	☐	☐			
5	수급자 및 그 보호자가 열람 요청 시, 가이드 라인에 명시된 열람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열람하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			
6	열람요청서, 결정통지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의 문서를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	☐			
7	외부 전문기관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관리하고 있는가?	☐	☐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행복이가득한집 (14211000144)
- 동의 기간 : 202 . . . ~ 202 . . . 까지
- 보호자 연락처 :

행복이가득한집 시설장 귀하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장기요양기관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본인 이외의 다른 수급자나 제3자에게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 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열람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인)
열람자	소속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 월 일

행복이가득한집 시설장 귀하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장기요양기관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본인 이외의 다른 수급자나 제3자에게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 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열람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열람사유	☐ 관리책임자 ☐ 운영담당자 ☐ 모니터링 담당자 ☐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
아
그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행복이가득한집 시설장 귀하